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2024. 12. 10(화)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창훈



# 목 차

1..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8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3,457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기관운영비 출연 : 금1,002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자체사업비 출연 : 금2,455백만 원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5. 검토의견

- 본 출연 계획안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의 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 문화예술 중심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와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한 각종사업 -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YES! 키즈존, 달성문화교차로, 달성군립합창단, 달천예술창작공간 및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적절한 운영 지원을 통하여 달성군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 예술 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89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운영비 증가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인상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안 제13조)
-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등 현실화(안 [별표1])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달성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운영비 증가로 인한 시설 이용료,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반환일을 5근무일 이내로 규정하는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를 통하여 보다 신속한 사용, 이용료 반환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로 수영장의 이용요금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및 그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주민의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을 완화하였습니다.
- 참고로, 수영장 주5회 이용료의 경우 기존 77,000원에서 88,000원으로 14.3%, 주3회는 54,000원에서 62,000원으로 14.8% 인상하였으며, 헬스장의 월 이용요금은 50,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90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배상책임 기준 및 안전사고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속시설 종류 및 사용료 등을 현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부속시설 종류에 대한 사항 현행화(안 제3조)
-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안 제9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 구체화(안 제11조)
- 사용료 인상 및 부가가치세 삭제, 부속시설 종류 현행화(안 [별표1])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배상 책임 기준 및 안전사고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속시설 종류 및 사용료 등을 현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속시설 중 기 철거된 음향 및 조명시설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 허가에서 영리목적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반환일을 5근무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사용, 이용료 반환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사용자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공연장 운영의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사용료도 타 자치단체의 야외 공연장 사용료를 참고하여 이용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소폭 인상 하였습니다.

- 신속한 사용, 이용료 반환, 안전사고 조치 기준 명확화를 통한 사용자의 주의의무 강화 그리고, 사용료 및 부속시설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91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신설된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자 함
- 공공요금 인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을 인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세분화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경로대상 연령 기준 조정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정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안)제6조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반기별 점검 의무화

- 안[별표1] 신설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치를 추가반영
- 안[별표2], 안[별표3] 공공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및 수요에 따른 사용료의 세분화
- 안[별표5] 사용료의 감면 항목 중 경로대상 연령 기준 조정과 사용료 감면 비율 정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2019.10.21.의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설(옥포 파크골프장, 현풍 원오 파크골프장) 중 미반영된 신규 파크골프장 시설을 추가하고
-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용료를 조정·현실화하고 수요에 따른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 세분화 및 경로대상 연령 기준 조정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정비하여 달성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제2019-483호)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체육시설 관리상태 등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예 : 반기별)을 의무화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92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달성군 파크골프장의 명칭에 지역 위치를 반영하고 시설을 현행화하여 기존에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시설 명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하고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명칭 및 위치) 개정 및 현행화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파크골프장 명칭에 지역 위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파크골프장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 기존 시설(옥포 파크골프장, 현풍 원오 파크골프장) 중 미반영된 신규 파크골프장 시설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93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사문진 역사공원 내의 폐쇄 시설물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 건축물 및 그 외 시설물 통합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사문진 역사공원 내 시설물 조항 삭제 및 신설(안 제4조)
- “달성군수”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로 변경(안 제4조제2항)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9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념비 및 조형물 등 경미한 시설물을 제4조제1항 제10호 ‘그 밖의 구조물 및 조형물’에 통합하여 포함시키고, 주요 시설물인 매표소, 워터스크린 분수대(피아노분수)를 신설 추가하는 등
- 사문진 역사공원 내의 폐쇄 시설물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 건축물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물 및 그 외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94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사문진 폐쇄시설물에 대한 조례 내용 삭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소형보트 용어 정의 삭제(안 제2조3호)
- 강정고령보 계류장 명칭 및 위치 삭제(안 제3조)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를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6조2항2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사항 적용(안 제10조1항)
- 사문진 유람선 이용료에서 소형보트 삭제(안 별표1)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문진 폐쇄 시설물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하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수상이용시설의 유람선 단일화에 따라 소형보트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수상시설의 위치를 강정보계류장 폐쇄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문진 나루터로 하였으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4항에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된 바,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비상상황 발생 또는 선원의 지시가 있을 때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상이용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95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비슬산유스호스텔 단체 이용객의 기준을 4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여 비슬산유스호스텔의 단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단체”의 정의를 “40명”에서 “20명”으로 변경(안 제3조, 안 제 13조1항)
- 부대시설에 중회의실 추가(안 별표1)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 5. 검토의견

-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자연휴양림, 화석박물관 등 단체 적용 기준을 20명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비슬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서도 “단체”의 정의를 “4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 또한, 기업 워크숍 및 영어마을 운영결과 소회의실만으로는 회의 및 교육 등에 불편함이 발생됨에 따라 기존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체력단련실)을 중회의실(74㎡ 정도)로 개선 운영하여
-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아울러 비슬산유스호스텔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달성군 단체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별표1 단체 20인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단체 기준 20인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별표1 단체 20인 이상

○ 타시군구 유스호스텔 단체 규정

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정의) 5.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정의) 4. “단체“라 함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하며, 9세 미만의 어린이 단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정의) 3.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정의)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4.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96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낙동강레포츠밸리의 시설 이용 및 추가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를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5조2항)
- 시설이용료 반환 기한 설정(안 제7조)
- 사용자 시설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조정(안 제8조)

- 사전예약제 운영 내용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기한 변경(안 제11조)
-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변경(안 별표 2)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낙동강레포츠벨리의 시설 이용 및 추가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 시설이용료, 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사전예약제 운영 등은 조례상 구체적인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민원을 예방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용료 기준을 마련,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참고자료

### ○ 시설 이용 관련 주요 변경 내용

- 시설이용료 반환 시기 - 5근무일(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내 반환
  - 추가이용료 - 1시간 1만원, 3시간 이상 1일치 이용료 부과
  - 사전예약제 - 24시간이내, 예약후 1시간, 입금방법으로 개선
-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산 시스템상 다음달에 결제
    - 예약취소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 사전예약제 적용범위 및 대상자가 명시 구체화
    - 시설범위 - 전체시설의 50% 이내
    - 대상자 - 달성군민, 등록장애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97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및 운영사항을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시설이용시간 조정(안 제5조)
- 시설사용료 반환 기한 규정(안 제8조)
- 용어의 뜻, 시설 명칭 변경 및 시설사용료 조정(안 별표1)
-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2)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 시설의 이용시간과 사용료를 국립자연휴양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인상하여 동일유형의 시설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반환일을 5근무일 이내로 규정하는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를 통하여 보다 신속한 사용, 이용료 반환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 자연휴양림의 운영 현실화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현행 시설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시설 사용 시간 비교

구분	비슬산·화원 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		공립(지자체)자연휴양림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청도자연휴양림 (청도군)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영천시)		장곡자연휴양림 (군위군)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칠곡군)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사용 시간	15시	12시	15시	11시	15시	11시	15시	11시	14시	11시	15시	11시

○ 시설 사용료 비교(현행 기준)

- 자연휴양림

시설구분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비슬산자연휴양림 사용료			화원자연휴양림 사용료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객실	숲속의 집 및 연립동	5인실 (29-33㎡)	58,000	106,000	4인(29㎡)	60,000	90,000	-	-	-
		8-9인실 (45-57㎡)	98,000	173,000	-	-	-	8인실 (50㎡)	100,000	140,000
		10-11인실 (58-67㎡)	124,000	208,000	10인 (67㎡)	120,000	180,000	10인실 (68㎡)	130,000	180,000
	산림 문화 휴양관	4인실 (19-28㎡)	44,000	76,000	4인(21㎡)	50,000	70,000	4인실 (29㎡)	60,000	90,000
		5인실 (29-33㎡)	56,000	102,000	5인(30㎡)	60,000	90,000			
		10-11인실 (58-67㎡)	118,000	197,000	9인(60㎡)	110,000	160,000			
		12인실 (68㎡ 이상)	152,000	236,000	16인 (96㎡)	140,000	200,000	16인 (101㎡)	170,000	240,000

- 오토캠핑장

구분	비슬산휴양림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팔공금화자연휴양림(칠곡)			송정자연휴양림(칠곡)			
	기준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성수기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캠핑 데크	7*4 (28㎡)	15,000	20,000	30,000	데크4*6 숲속3*6	20,000	25,000	-	-	-	24㎡	20,000	30,000	
	8*5 (40㎡)	20,000	30,000	40,000	66㎡ (오토)	30,000	35,000	-	-	-	-	-	-	
	-	-	-	-	-	-	-	-	-	-	-	86㎡ (오토)	30,000	40,000
	-	-	-	-	-	-	-	-	-	-	-	160㎡ (오토)	40,000	60,000
카라반	4인	60,000	80,000	100,000	4인	100,000	140,000	-	-	-	4인	60,000	100,000	
	6인	80,000	100,000	120,000	6인	-	-	6인	70,000	120,000	6인	80,000	120,000	
	8인	100,000	120,000	140,000	-	-	-	-	-	-	8인	100,000	140,00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598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2. 제안사유

- 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체험료 반환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체험료 반환 기한 규정(안 제7조)
- 체험료 감면대상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안 별표1)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반환일을 5근무일 이내로 규정하는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를 통하여 보다 신속한 체험료 반환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